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의장

제896호 2012. 6. 4.(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2-37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고시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638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6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3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6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 5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2-6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 22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2 - 37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0-64호(2010.12.06)로 실시계획 고시한 심곡동 325-1번지 일원의 인천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을 시행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4)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6. 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변경사유 : 연희노인문화센터 내 부대시설 설치계획 변경
2.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5-1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 【명칭】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공사
4.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2,480.3㎡, 연면적 2,505.9㎡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11. 12. 31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12. 06. 30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638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2.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5. 3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가. 결정·공시대상

- 2012.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65,120필지)
- 과년도분(2010. 1. 1, 2011. 1. 1일 기준) 직권정정 : 1필지

나. 결정·공시일 : 2012. 5. 31

다. 결정·공시내용 : 필지별 ㎡당 가격

라. 결정·공시내용 열람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부동산/건축」 ⇒ 「개별공시지가」

2. 이의신청

가. 대상 :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12. 5. 31 ~ 6. 29.

다. 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라. 제출서류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구 토지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비치)

※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 「민원서식」 란에 게재

마. 접수처 : 서구청 토지정보과

바.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인 2012년 6월29일 까지 소인분에 한함) 및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 접수

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643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센터장의 임기 조정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가정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4974) 또는 Fax(560-27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센터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6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관 지정
- 행정정보 공표
-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민원봉사과장, 전화: 560-4271 , FAX: 560-28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주무부서”란 주관부서에서 배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주되게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나. “지원부서”란 주무부서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지원해주는 부서를 말한다.
5.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①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

- ② 주관부서는 청구내용에 따라 처리부서를 주무부서와 지원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청구된 정보가 인천광역시 서구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에 보존 중인 때에

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무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행정정보공표제도 등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행정정보 공표의 구체적 내용·부서·주기 및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공표방법 및 처리부서) ① 공표대상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처리부서에서 공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복합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8조(그 밖의 공표운영 등)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 또는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주민과 소속공무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

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10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에 의한다.

③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르지 아니한 정보공개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은 경제지원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구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3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⑥ 원활한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인·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비밀엄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에서 해촉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21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행정정보의 공표목록(제6조 관련)

행정정보	공표내용	공표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1. 해당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계획	주요업무계획	기획홍보실	연 1회	1월 중
	예산편성현황	기획홍보실	연 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결산내역	재무과	연 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기금운용계획 및 현황	기획홍보실	연 1회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중장기종합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부문별 중장기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중요한 기본계획서	해당부서	수시	계획수립 후 1개월 이내
3.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	평가결과보고서	기획홍보실	연 1회	익년도 2월 중
4.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	기본통계자료	기획홍보실	연 1회	1월 중
5.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지출금액, 일자	총무과	매월	익월 10일 이내
6. 수의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계약현황	재무과	매월	익월 10일 이내
7.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공사·용역·물품에 관한 분기별 발주계획	발주현황	재무과	분기	3월, 6월, 9월, 12월 중
8. 사용료, 수수료 조정계획	사용료조정계획서	세무과	수시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수수료조정계획서	세무과	수시	구의회 의결 후 1개월 이내
9.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재난관리과	수시	집행 후 10일 이내
10.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측정결과	약수터수질검사결과	환경보전과	매월	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하천 수질검사결과	환경보전과	매월	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대기오존농도측정결과	환경보전과	수시	검사결과 통보 후 즉시
11. 교량, 터널, 지하보도 등 안전진단결과 및 예산집행현황	진단결과 및 예산집행현황	건설과	반기별	진단 후 1개월 이내
12. 구의회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질의 및 답변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기획홍보실	수시	답변 및 처리결과 후 20일 이내

[별표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제9조 관련)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2.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정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3.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4.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관련문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4항)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지방세의 부과 관련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 가. 납세자가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 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6.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공개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7. 전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8. 기타 개별 법령에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전산·통신장비 운영관련사항 및 보안시스템 구성도, 보안컨설팅 결과 등 공개시 서구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보안시설,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보안업무와 관련된 비밀문서(대외비, I·II·III 비밀문서)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인감·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전염병 예방, 식품·보건의약품 등의 위생감시, 환경감시, 건축규제 등에 관한 활동사항
3. 에이즈 감염자 관리, 정신질환자·재가 암환자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정보
3. 수사의뢰 협조 증인 사항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검사 관련 정보〉

1.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 결과 처리관련 서류, 감사결과 문책 및 공무원 징계 의결 사항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다만,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시험 관련 정보〉

3.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면접위원 명단, 채점관리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 다만,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규제 및 입찰 관련 정보〉

4. 단체지원(보조금, 사업비) 심사관련 심사위원 명단
5. 인·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결정통지에 관한 사항
다만, 개별인·허가 신청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결정통지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6.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계획 등의 사항으로써 정당한 이익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7.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주거공간의 설계도면,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및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공개시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8.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나. 유자격자 명부 및 입찰예정자의 경영상태 평가서 등 입찰참가 법인·개인·단체 정보

〈인사 관련 정보〉

9. 인사평정·징계·상훈·승진 등 관련 심의·회의록 및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정보

다만, 인사이동상황, 합의제 행정기관의 위원명부, 서훈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10. 공무원 등의 임면, 복무, 인사교류, 급여, 연금,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인사에 관한 조사 결과, 통계보고 결과 및 교육연수 실시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11.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가.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2. 진행중인 행정심판 관련자료 (답변서 등 증빙서류)

13. 서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구 조직개편, 직제개편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결정전에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14. 공직자윤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
-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마. 회의시 단서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의결한 사항
15.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공무원의 연구실적 등)
16. 토지수용 재결 진행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및 타인의 토지수용 재결 관련 정보 (재결서 및 감정평가서 등)
17. 토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정보 (보상가액 및 보상 유무)
18. 기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가. 구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나. 행정 내부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다.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및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개인·법인의 토지거래내역, 부동산중개업자 등록현황(주민등록번호),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 과태료 등 부과 및 납부내역, 지방세과세증명서, 향측판독적출조서, 주민조회 등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2. 공무원 등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및 사업자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쓰레기 무단투기자 및 방치차량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
5. 수형사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신고 등 수형인명표 기재사항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및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3.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도시개발계획과 역세권 개발 등 도시개발계획 입안전의 관련 정보
2. 도시개발사업 지정 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 등
3. 용지매수계약서 등 공개시 투기목적이나 매점매석 우려가 있는 정보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공 개 심 의 요 청 서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인)

청 구 인 (이 의 신 청 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생 년 월 일 (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정보공개청구(또는 이의신청)내용		
심의 요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공개여부 결정곤란 <input type="checkbox"/> (청구인·제3자)이의신청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제도운영에관한사항	
심의 요청 사유		
처리부서검토의견		
기 타 사 항		

첨부 이의신청서 및 기타 관련자료 각 1부. 끝.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 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재적의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심의사항							
심의의결							
※ 개별 발표자의 발표요지는 별지에 기재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 - 6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에 대하여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폐지 규칙

2.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기존 규칙 폐지

3.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기존 규칙 폐지

4. 의견제출

이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2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민원봉사과장, 전화: 560-4271 , FAX: 560-28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